

국민연금공단 공무직(환경관리, 보안, 시설관리) 공개채용 공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환경관리, 보안, 시설분야 공무직을 아래와 같이 공개채용 합니다.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 채용분야 : 환경관리(청소), 보안(경비), 시설관리(건물안내, 전기·기계, 소장) 분야
 - (환경관리) 사옥 및 시설물의 내·외부 청소, 쓰레기 수거·처리 등 주변 환경 정비, 조경관리 등 관련업무
 - (보안) 출입 인원·차량관리, 사옥 경비·순찰 등 관련업무
 - (시설) 건물안내 및 상담 등 관련업무<주임(가)>, 전기·에너지·공조·소방 등 시설관리 업무<주임(나)>, 시설관리 총괄<소장(바)>
- 채용직급 : 공무직(시보기간 3개월 운영 후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정규 임용)
- 채용인원 : 총 13명

〈사옥별 채용인원(명)〉

구분 직급	계	보안직	환경관리직	시설직		
		주임	주임	주임(가)	주임(나)	소장(바)
합계	13	3	4	2	3	1
본부	2	-	1	1	-	-
총정로	1	-	-	1	-	-
강남	2	-	-	-	2	-
잠실	1	-	1(6시간)	-	-	-
춘천	2	-	1	-	1	-
청주	1	-	1	-	-	-
부산	1	-	-	-	-	1
안동	1	1	-	-	-	-
양산	2	2	-	-	-	-

* 사옥별 위치는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참조

2. 지원자격

채용분야		인원(명)	지원자격
합계		13	-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성별·학력 등 제한 없음(단, 보안직 및 환경관리 직은 65세 이상, 시설직은 60세 이상자는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9조(결격사유)^{주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직후('18.8.20.(월)예정) 즉시 근무가 가능한자
보안직	주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업법 제10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관련 분야 유경험자 우대
환경관리직	주임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지원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은 없음 ※ 관련 분야 유경험자 우대
시설직	주임(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지원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은 없음 ※ 관련 분야 유경험자 우대
	주임(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전기,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건축설비, 소방설비기계, 가스
	소장(바)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안전관리자^{주3)}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주4)} 선임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물 관리 또는 아파트관리 총괄책임(소장) 5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전기,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건축설비, 소방설비기계, 가스)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경력산정) 30일을 1개월로, 365일을 1년으로 환산하여 산정하며,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다수인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인정되는 자격증) 분야별 자격증^{주2)} 참조

주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별표 12) 관련 발전설비 중 전기설비의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의 안전관리자 자격에 해당하는자

주4)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항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자

주1)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주2) 인정되는 자격증

분야	자격증
전기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에너지	에너지관리기능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기능장
공조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건축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소방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기술사
가스	가스기능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술사

주3)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요건

구 분	안전 관리 대상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전기설비 (수력,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및 그밖의 발전소 공통)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 전기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소 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주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요건(소방시설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고,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6.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6.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마.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8. 제1항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3. 근로조건

근무장소 : 지원한 공단 사옥

근무시간

- **환경관리** : 1일 8시간(06:30~15:30)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단 잠실 사옥은 1일 6시간(08:00~15:00) 근무
- **보안·시설<주임(나)>** : 감시·단속적 근로형태로 운영 중인 기존 교대근무 방식*을 준용

- * 3교대를 원칙으로 하되, 사옥 근무인원에 따라 2교대 및 4교대 적용 가능
- * (예시) 2교대 : 주야 → 비, 3교대 : 주간 → 주야 → 비, 4교대 : 주간 → 주간 → 주야 → 비

정년 : 환경관리·보안분야 만 65세, 시설분야 만 60세

보수수준(연봉)

구분	보안직 (주임)	환경관리직 (주임)	시설직		
			주임(가)	주임(나)	소장(바)
보수	2,168만원 내외	2,168만원 내외	2,712만원 내외	3,634만원 내외	

- ※ 연봉제를 적용하며,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시간외·휴일수당이 모두 포함된 금액임, 다만 교대근무자가 근무편성표에 의하여 야간에 근로한 경우에는 야간 휴계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에 대하여 수당 지급
- ※ 경력증명서는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확인을 위하여 제출받으며, 연봉제를 적용함에 따라 호봉산정과는 무관함
- ※ 시간제근로자는 전일제(8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4. 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18. 7. 13.(금) ~ 7. 20.(금) 18:00

접수방법 : 인터넷으로만 접수

※ 우편·방문·이메일로는 접수받지 않으며, 인터넷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집중으로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요망

5. 전형단계, 방법 및 일정

전형단계	전형방법 및 일정	합격자 발표일
서류심사	자격요건 충족여부, 경력, 자격증,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5배수 내외 선발	2018.7.31.(화) 15:00
면접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8. 8. 7.(화) • 장소 : 본부 및 공단소재 지역본부 • 방법 : 집단면접 	
최종 합격자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전형 합격자 중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 • 선발자 중 신체검사 합격자에 한해 임용 	2018.8.13.(월) 15:00
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일 : 2018. 8.20.(월) ※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단계별 합격자 공고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 예정이며,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우대사항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응시자 본인이 지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서류전형시 우대>

부양가족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서류전형시 우대>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5세이상 직계존속, 본인의 만 20세미만 직계비속으로
하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 해야 하며, 공고일 이전에 전입시에만 인정

7. 기타 유의사항

- 합격자 공고 등 전형과 관련된 모든 사항과 변경사항 발생 시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공고하며,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 지원서는 접수 마감시간(2018.7.20. 18:00)까지 모든 작성을 종료하고, 정상적으로 접수번호(수험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응시자격, 자격증 유효여부, 경력기간 산정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따라 서류전형 시 지원자가 기재한 내용만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기재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는 면접 시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추후 증빙서류와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 임용일 전 직전 근무지에서 퇴사처리가 완료 되어야 하며, 재직 중에는 4대보험 적용여부를 불문하고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공단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임용포기 등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며, 임용사유 발생시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자에게 개별통보합니다.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임용일로부터 6개월까지, 단 해당결원이 포함된 채용 계획안이 수립되는 경우 계획안 수립일까지)
- 기타 입사지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인사운영부(063-713-521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7. 13.

